

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. 6. 20 조례 제2257호
일부개정 2017. 12. 29 조례 제232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
공개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
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시설물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
 - 가. “공공시설물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 - 나. “공공시설”이란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
관이 광명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
린이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시설, 문화·체육시설, 교량, 주차장 및 공원
등의 시설을 말한다.
 - 다. “공공건축물”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민들이
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, 공공도서관, 공연장, 전시장, 문
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.
2. “표지판 등”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(동판, 석판, 기타)에
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3. “설치 및 건립비용”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
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) ① 광명시장은 공공시설물
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
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
여야 하고, 광명시 홈페이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
「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」 제5조~제7조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〈개정 2017. 12. 29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재물조사 대상물품

2.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(도로포장, 보도블록, 맨홀 등)

제4조(공개 범위)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7. 12. 29〉

1.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

2.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.

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. 다만,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,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개 내용 및 방법)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설물명

2. 설치일시

3. 시공업체

4. 설치비용

5. 관리부서

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명

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2. 공사기간
 3. 발주기관의 명칭
 4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5. 감리자의 성명(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6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 7. 건립비용
-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29 조례 제232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[별표]

공개대상 공공시설물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물
1. 도로 · 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·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, 보안등· 벤치, 미디어폴 주민편익시설· 교량(육교)· 자전거 보관대
2. 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주 · 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· 공영주차장
3. 공원 · 하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공원 안내표지판· 벤치, 음수대,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· 미술작품, 조형물 등· 체육시설물(테니스장, 축구장, 운동기구 등)· 하천시설물
4. 청소 · 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가로휴지통,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· 상징 조형물
5.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그 밖의 시설물